



제434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주요 충당부채에 관한 분석보고서 추가〉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20호)

2026. 4.

재 정 경 제 기 획 위 원 회

전문위원 임명현



## 목 차

|                                                            |   |
|------------------------------------------------------------|---|
| I . 제안경 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주요 충당부채에 관한 분석보고서 추가<br>(안 제15조의2제4항) ..... | 2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수영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2. 20.

다. 회 부 일 : 2026. 2. 2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절한 정보를 생산·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재원이 고갈되는 미래 재정위험을 국가차원에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국민연금 및 군인·공무원 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해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국가 재정 전반에 유용한 관리를 돕고자 함(안 제15조의2제4항).

### Ⅲ.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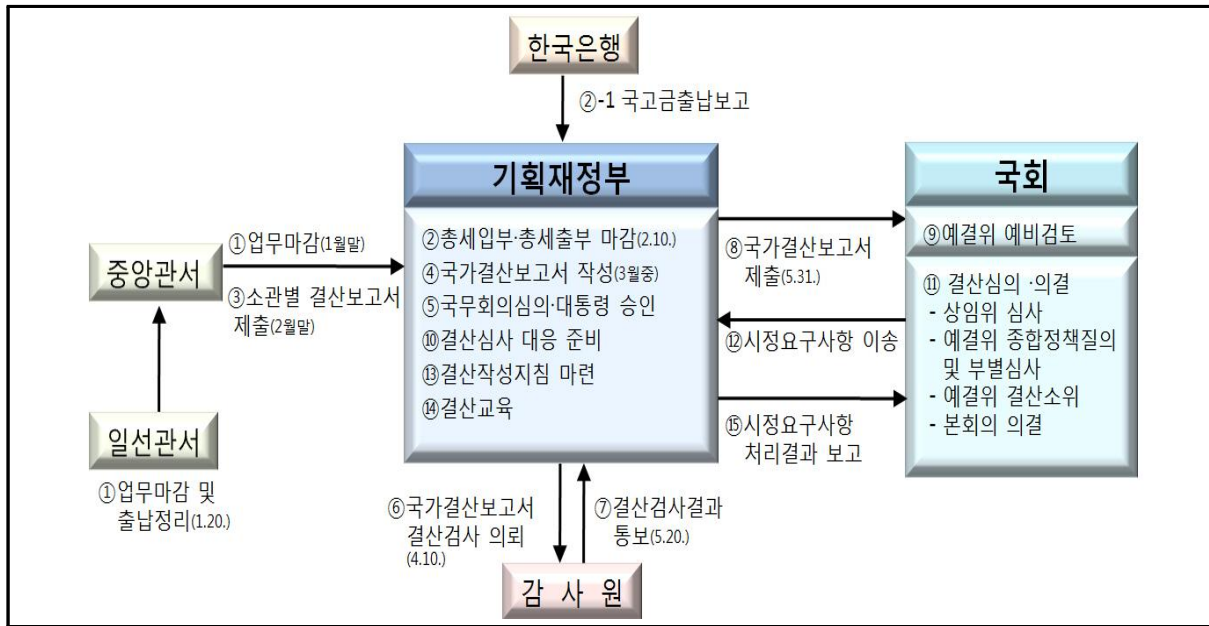
#### 1.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주요 총당부채에 관한 분석보고서 추가 (안 제15조의2제4항)

| 현 행                                                                                                                                                                                                                                                                                                                                                                                                  | 개 정 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 (중 략)</li> <li>- 기금 수입지출결산 첨부서류 (중 략)</li> <li>- 세입세출결산 추가 첨부서류 (중 략)</li> <li>- 재무제표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채무관리보고서</li> <li>·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li> <li>· &lt;신 설&gt;</li> </ul> </li> </ul> </li> <l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 (중 략)</li> <li>- 기금 수입지출결산 첨부서류 (중 략)</li> <li>- 세입세출결산 추가 첨부서류 (중 략)</li> <li>- 재무제표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채무관리보고서</li> <li>·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li> <li>· <u>연금총당부채, 보증총당부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총당부채에 관한 분석보고서</u></li> </ul> </li> </ul> </li> <l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li> </ul> |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 관련 부속서류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및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등)에 연금총당부채, 보증총당부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총당부채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국가결산 체계]



※ 자료: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이를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5월 말까지 국회로 제출되는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결산 개요,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성과보고서로 구성<sup>1)</sup>되며, 「국가회계

1)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

법」 제15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부속서류를 별도로 첨부하고 있음.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국가회계법」 제15조의2)]

-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4. 이월명세서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 7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8. 예비금 사용명세서
  - 8의2.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9.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10.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11.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 11의2. 「국가재정법」 제90조제9항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재원조성실적표
  2. 성인지 기금결산서
  - 2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③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통합재정수지표
  2.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 ④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 가. 재정상태표
  - 나. 재정운영표
  - 다. 순자산변동표
  - 라. 현금흐름표
  4. 성과보고서

개정안은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4항을 개정하여 재정경제부로 하여금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 부속서류<sup>2)</sup>에 주요 충당부채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미래의 재정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는 인구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세입 기반을 위축시키는 반면,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수요의 증대를 야기하여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음.

특히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에 따르면,<sup>3)</sup> 의무지출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등의 가파른 증가로 인해 2025년 366.4조 원에서 2029년 471.5조 원으로 연평균 6.5%씩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연평균 10.6% 증가), 공무원연금(연평균 5.9% 증가) 등 공적연금의 급여지출이 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잠재적 부담인 비확정 부채(연금충당부채 및 보증충당부채)<sup>4)</sup> 역시 적극적으로

---

2) 현행 법령상 재무제표 부속서류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총 4종임

3) 「2025~2029년 NABO 중기재정전망」(2025. 10.)

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 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제21조(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충당부채를 말한다.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중기재정전망 : 의무지출]

(단위 : 조원, %)

| 구분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연평균<br>증가율 |
|---------------------|-----------------|-----------------|-----------------|-----------------|-----------------|------------|
| 의무지출<br>(GDP 대비 비율) | 366.4<br>(13.9) | 391.7<br>(14.3) | 420.2<br>(14.7) | 445.4<br>(15.1) | 471.5<br>(15.4) | 6.5        |
| 복지분야                | 185.1           | 198.9           | 213.7           | 228.4           | 244.3           | 7.2        |
| 공적연금                | 87.0            | 94.4            | 103.0           | 111.4           | 121.3           | 8.7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2029년 NABO 중기재정전망」(2025. 10.) 표 중 일부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주요 충당부채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명시하여 국가가 이를 가시화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향후 예상되는 재정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둘째, 국가 전체 부채의 균형적 보고 및 국회의 재정 통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현행법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 해당하는 국채·차입금 등의 규모와 증감 현황, 적자성·금융성 채무의 구분 및 만기 구조와 이자율 등 위험관리 현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부속서류로 규정함으로써 확정 채무는 관리하고 있음. 반면, 대규모 미래지출을 수반하는 비확정 부채인 연금·보증 충당부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 보고 의무를 두지 않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및 하위 예규인 「연금 회계처리지침」, 「보증 회계처리지침」 등<sup>5)</sup>에

5)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주석) ①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

따라 재무제표상 ‘주석’의 형태로만 작성하고 있음.

국가채무가 2029년 1,779.2조원(GDP 대비 58.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sup>6)</sup>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잠재적 부채인 충당부채 분석보고서를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것은 국가의 전체적인 부채를 확정 채무와 잠재적 채무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보여줌으로써 결산 부속서류의 활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

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 주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 이 규칙에서 주석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3.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③ 주석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연금 회계처리지침」 41. (연금충당부채 주석사항)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연금기금은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연금충당부채의 변동내용을 가능한 한 다음 각각의 변동원인별로 회계기간 중의 효과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가) 당기근무원가 (나) 이자원가 (다) 보험수리적 손익 (라) 연금지급액 (마) 과거근무원가

(2) 연금수익 및 연금비용을 각각의 원인별로 회계기간 중의 효과를 구분하여 공시한다.(생략)

(3) 연금충당부채의 산정내역을 그 산정을 위해 사용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과 함께 공시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을 포함한다.

(가) 할인율 (나) 물가상승률 (다) 임금상승률 (라) 기타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43. (연금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1) 연금기금은 재무제표이용자가 연금사업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단44 및 문단45에 따른 연금보고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2)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1)의 연금보고서 중 주요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44.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연금보고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연금보고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열거되지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별도항목으로 하여 연금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4) 연금충당부채의 평가 방법과 결과: 보험계리기관의 감사보고서(선택), 연금충당부채 평가 방식,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용내역과 산출근거, 연금충당부채의 산정결과와 그에 대한 설명, 회계연도별 연금충당부채의 변동원인과 그에 대한 설명,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연금충당부채 평가 관련 기타 주요사항 등

「보증 회계처리지침」 10. (주석사항) 신용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보증의 현황 및 주요내용

(2) 보증충당부채 산정내역

(3) 구상채권 및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

(4) 보증충당부채 변동내역

(5) 보증 종류 별 지급보증 금액

(6) 보증수익과 보증비용

6) 국가채무(조원): 1,303.6('25년) → 1,411.1('26년) → 1,525.6('27년) → 1,653.8('28년) → 1,779.2('29년)

\* 국회예산정책처, 「2025~2029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5. 10.)

엄중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보이지 않는 부채의 변동 내역을 상세히 분석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자의적 재정 운용을 견제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실질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충당부채는 회계상 추정치이므로 이를 확정 채무로 오인할 경우 불필요한 재정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국가채무관리보고서에서 다루는 채무는 정부가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확정된 채무인 반면, 충당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상의 추정치인 ‘비확정부채’임.<sup>7)</sup> 특히, 연금 관련 사항 중 국민·사학연금은 사회보장 급여로서 국제회계기준(IPSAS, PSDS 등)에 따라 연금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sup>8)</sup>, 실제 발생주의를 도입한 OECD 29개국 중 사회보장 급여의 연금충당부채를 반영한 사례가 없는 상황임.

7)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충당부채를 말한다.

8) 우리나라도 현재 국민·사학연금은 연금충당부채로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가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연금 회계처리지침」 4.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이 되는 급여 및 수당)

(1)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에 대하여 인식하며**,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급여와 「군인연금법」 제7조의 급여 중 아래의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군인연금의 경우 「군인재해보상법」 제7조의 급여 중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을 추가로 포함한다.

\*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급여)

(2)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상 급여 이외에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조 연계급여(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도 “연금충당부채” 측정 시 포함한다.

[OECD 38개국의 정부회계 기준]

| 구분                     | 국가명       | 발생주의 도입연도          | 정부회계기준              | 사회보장급여의<br>충당부채 산정 여부 | 지급보장<br>명문화 여부 |
|------------------------|-----------|--------------------|---------------------|-----------------------|----------------|
| 발생주의<br>도입국가<br>(29개국) | 대한민국      | 2009 <sup>1)</sup> | 자국기준 <sup>2)</sup>  | X                     | X              |
|                        | 미국        | 1998               | 자국기준                | X                     | X              |
|                        | 프랑스       | 2007               | 자국기준                | X                     | X              |
|                        | 캐나다       | 2003               | 자국기준                | X                     | X              |
|                        | 폴란드       | 2001               | 자국기준                | X                     | X              |
|                        | 덴마크       | 1990's             | 자국기준                | X                     | X              |
|                        | 핀란드       | 1990's             | 자국기준                | X                     | X              |
|                        | 헝가리       | 2013               | 자국기준                | X                     | X              |
|                        | 영국        | 2002               | IFRS <sup>3)</sup>  | X                     | X              |
|                        | 호주        | 1994               | IFRS                | X                     | X              |
|                        | 스페인       | 2010               | IPSAS <sup>4)</sup> | X                     | X              |
|                        | 터키        | 2006               | IPSAS               | X                     | X              |
|                        | 스위스       | 2006               | IPSAS               | X                     | X              |
|                        | 벨기에       | 2003               | IPSAS               | X                     | X              |
|                        | 오스트리아     | 2013               | IPSAS               | X                     | X              |
|                        | 이스라엘      | 2004               | IPSAS               | X                     | X              |
|                        | 칠레        | 2006               | IPSAS               | X                     | X              |
|                        | 체코        | 1989               | IPSAS               | X                     | X              |
|                        | 뉴질랜드      | 1993               | IPSAS               | X                     | X              |
|                        | 슬로바키아     | 2008               | IPSAS               | X                     | X              |
|                        | 리투아니아     | 2010               | IPSAS               | X                     | X              |
|                        | 라트비아      | 2007               | IPSAS               | X                     | X              |
|                        | 에스토니아     | 2004               | IPSAS               | X                     | X              |
|                        | 아이슬란드     | 1998               | IPSAS               | X                     | X              |
|                        | 일본        | 2000               | IPSAS 부분도입          | X                     | ○              |
|                        | 멕시코       | 2014               | IPSAS 부분도입          | X                     | X              |
|                        | 스웨덴       | 1993               | IPSAS 부분도입          | X                     | X              |
|                        | 콜롬비아      | 1996               | IPSAS 부분도입          | X                     | X              |
|                        | 코스타리카     | -                  | IPSAS               | X                     | X              |
| 미도입 국가<br>(9개국)        | 독일        | -                  | -                   | X                     | ○              |
|                        | 그리스 등 8개국 | -                  | -                   | X                     | X              |

1) '09년 국가회계법 개정 이후, 11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 작성 및 국회 제출

2) IPSAS 등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22개) 제정

3)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4) IPSAS(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 [사회보장급여 충당부채 관련 국제 규정]

| 구분                                                                                              | 규정                                                              |
|-------------------------------------------------------------------------------------------------|-----------------------------------------------------------------|
| <b>IPSAS</b><br>(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br>/국제회계기준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채는 <u>지급의무가 발생한 차기(차월) 연금지급액만을 인식</u>               |
| <b>PSDS</b><br>(공공부문 부채통계지침,<br>Public Sector Debt Statistics<br>/IMF·OECD)<br>* D2(일반정부 부채) 규정 | 퇴직연금, 건강보험 등 향후 <u>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약정은 부채로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u>  |
| <b>미국</b><br>연방정부회계기준<br>(SFFAS 17번)                                                            | 사회보험과 관련된 정부의 의무는 비교환거래이므로 <u>장래 추정지급액과 관련된 부채를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u> |

자료: 재정경제부

또한, 보증충당부채의 경우에도 이는 주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른 ‘대위변제 예상액’이라는 추정치에 불과함.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과 차이가 있거나 변동성이 큰 비확정부채 정보가 별도의 법정 보고서로 강조될 경우, 이를 당장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확정 채무로 오인하여 대외 정보이용자들이나 국민에게 불필요한 재정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확정부채 대비 비확정부채 규모가 큰 편인데<sup>1)</sup>, 이러한 정보가 정부 내 내부거래 제거 등 통합 회계 원칙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국제 신용평가사 등에 부정확하게 전달될 경우 국가 신인도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어 보임.

1)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확정부채는 1,015.8조원, 비확정부채는 1,570.0조원임.

[재무제표상 부채 규모 ('24결산 기준)]

(조원, %)

| 구분       | '23년<br>(A) | '24년<br>(B) | 증감<br>(B-A) |     | 비고                            |
|----------|-------------|-------------|-------------|-----|-------------------------------|
|          |             |             |             | %   |                               |
| 합계       | 2,439.5     | 2,585.8     | 146.3       | 6.0 |                               |
| ○ 확정부채   | 967.4       | 1,015.8     | 48.4        | 5.0 | - 국채, 차입금 등                   |
| ○ 비확정부채  | 1,472.1     | 1,570.0     | 97.9        | 6.7 |                               |
| (연금충당부채) | 1,230.2     | 1,312.9     | 82.7        | 6.7 | - 공무원·군인의 미래연금<br>지급액의 현재가치   |
| (보증충당부채) | 6.1         | 6.4         | 0.3         | 4.9 | - 신보·기보 등 보증에 대한<br>대위변제 예상금액 |

자료: 재정경제부

둘째, 별도의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의 부속서류 추가에 따른 행정적 효율성 및 실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도 연금충당부채의 변동 원인(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등)과 보증충당부채의 산정 내역은 재무제표의 '주석' 형태로 공시되고 있음. 이를 별도의 '분석보고서'라는 법정 서류로 신설할 경우, 현재 25종에 달하는 결산 부속서류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도 있어 보임.

특히, 주요 충당부채 분석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보이는데 현재 기금관리주체별로 분산된 분석 역량을 재정경제부 차원에서 통합 분석보고서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 인력 보강과 시스템 고도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중하

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첫째, 연금충당부채(공무원·군인연금) 및 보증충당부채에 대한 분석이 현재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작성 중이므로, 법 개정을 통한 분석보고서 신설의 실익이 적으며, 주요 충당부채에 관한 분석보고서는 재무제표의 특정 과목에 대한 보충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법령상 부속서류로 규정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연금 회계처리지침」 및 「보증 회계처리지침」 등 관련 예규에 따른 주석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둘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명시된 국민연금은 회계법령상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이 아니므로 분석의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사회보장급여로서 「연금 회계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이미 장기 재정추계 등을 포함한 연금보고서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작성하여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br>~ ③ (생략)                 |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br>~ ③ (현행과 같음)                            |
| ④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br>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br>한다. | ④ -----<br>-----<br>-----.                                       |
| 1.·2. (생략)                                        | 1.·2.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3. <u>연금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등<br/>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충당부<br/>채에 관한 분석보고서</u> |
| 3. (생략)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 ⑤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

|              |
|--------------|
| 문의처          |
| 02)6788-5153 |